

# 기업신속대응센터 운영규정

- 제정 : 2019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와 산업체의 산학협력을 장려하고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신속대응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소재)** 센터는 산학협력단 산하기구로 설치한다.

**제3조(직무)** 센터는 원스톱 기업지원,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4조(사업)** 센터는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수행한다

1. 대학의 특성,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원스톱 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
2. 애로상담, 기술지도 및 기술·경영자문·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
3. 산학연계 맞춤형 기업지원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
4. 기타 기업지원 및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관리

**제5조(조직)**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신속대응센터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, 기획처장, 산학협력처장, 학생복지처장, 기업신속대응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기업신속대응센터 소속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 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회)** ①기술지도 수요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(Tech Doctor)으로 구성된 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회를 둔다.

②기업기술지원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재정)** 센터의 재원은 교비·산단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**제9조(예산 및 결산)**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**제10조(세칙)** 본 규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업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